



LOS ANGELES COUNTY
**CONSUMER &
BUSINESS AFFAIRS**

BRIAN J. STIGER
국장

500 W. Temple Street, Room B-96
Los Angeles, CA 90012

(800) 593-8222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내
(213) 974-1452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밖

이메일: wagehelp@dcba.lacounty.gov

웹사이트: dcba.lacounty.gov

저희를 따라오시면 최근 소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페이스북 | [LACountyDCBA](#)

인스타그램 | [LACountyDCBA](#)

트위터

소비자 | [LACountyDCBA](#)

소규모 업체 | [LACoSmallBiz](#)

스페인어 | [LACoConsumidor](#)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감리 위원회

Hilda L. Solis, 제1 지역구
Mark Ridley-Thomas, 제2 지역구
Sheila Kuehl, 제3 지역구
Janice Hahn, 제4 지역구
Kathryn Barger, 제5 지역구

Last Updated 12.5.16



무료 서비스

L.A. 카운티 소비자 및 사업체를 위한

- 임금 조례 집행
- 소비자 상담
- 고발건 조사
- 법원 소액 사건 지원
- 중재
- 차압 예방 지원
- 소규모 사업체 지원
- 소비자 교육 및 봉사활동
- 재정적 능력 부여

1976년 이래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비자 및 사업체를 위해서 봉사



우리의 사명

우리는 임금을 위한 공정하고
생동력있는 시장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과 옹호활동과
고발건의 해결을 통해서
소비자, 사업체 및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LOS ANGELES COUNTY
**CONSUMER &
BUSINESS AFFAIRS**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의 최저 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FOR WORKERS (KOREAN)



L.A. 카운티의 새 최저 임금

자치제로 편입되지 않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한 최저 임금이 2016년 7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자치제로 편입되지 않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에 소재한 모든 고용주들은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상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은 언제 인상됩니까?

카운티의 최저 임금은 매년 7월 1일에 인상됩니다.

고용주들은 아래의 발효일로 부터 적어도 아래의 시간당 임금을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연도	26명 이상 종업원 고용주	25명 이하 종업원 고용주
2016	\$10.50	\$10.00
2017	\$12.00	\$10.50
2018	\$13.25	\$12.00
2019	\$14.25	\$13.25
2020	\$15.00	\$14.25
2021	\$15.00	\$15.00

본인에게 카운티의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적절한 최저 임금은 귀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만약 귀하가 자치제로 편입되지 않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에서 한 주에 최소한 2 시간 동안 일한다면 귀하에게 그러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 그 미편입 카운티 지역의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로스 앤젤레스 자치제 미편입 지역 밖에서 일한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 임금 또는 아니면 귀하가 일하는 시의 최저 임금을 지불받게 됩니다.

귀하의 고용 신분이나 귀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귀하의 고용주 사업체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치제로 편입되지 않은 카운티 지역에서 일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하가 자치제로 편입되지 않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카운티 등기국 기록부의 웹사이트 <http://rrcc.lacounty.gov/OnlineDistrictmapApp>를 방문하여 주소를 입력하거나 (800) 593-8222로 DCBA에 전화하십시오.

본인이 최저 임금을 지불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어떤 최저 임금이 귀하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귀하가 맞는 임금률의 급여를 수령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급여 수표 쪽지를 점검한다.
- 귀하의 직장에 게재된 현재 최저 임금에 관한 최근 공지서를 점검한다. 귀하의 고용주가 이 공지서를 필요로 한다면 DCBA에 전화한다.

고발건의 제기

귀하의 고용주가 의무적인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여 고발건을 제기하십시오. 저희들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전화: (800) 593-8222
- 온라인: dcba.lacounty.gov
- 저희 사무실들중의 한 곳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 이메일: wagehelp@dcba.lacounty.gov

저희는 귀하의 이민 신분을 물어보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발을 하면 실직하게 될까요?

고용주가 아래와 같은 종업원을 상대로 하여 보복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의무적인 최저 임금의 지불을 요청한 종업원.
- 주장되고 있는 임금 관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종업원.
- 다른 종업원들에게 그들의 권리 또는 주장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종업원.

보복에는 다음의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단 그것들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임금 관련 고발을 했다고 귀하를 해고시킨다.
- 귀하의 교대 근무 시간을 줄인다.
- 이민국에 연락하겠다고 위협한다.

DCBA가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방법

DCBA는 귀하가 카운티의 새로운 최저 임금 법규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주장되고 있는 바 귀하의 고용주에 의한 법규의 위반을 조사하며 귀하에게 갚아야 하는 임금을 귀하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800) 593-8222



dcba.lacounty.gov